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09년 10월 28일

나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09년 10월 28일

라. 상정일자 : 2009년 11월 6일

제147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설명자 : 경제통상국장 이 홍 희

나. 제안이유

-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을 독립유공자·5.18민주유공자 및 고엽제후유의증 환자, 특수임무수행자 등으로 상위 관련법에 의거 추가, 신설하고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여 이용객들의 서비스를 향상코자 함

다. 주요내용

○ 체육시설 이용자 감면대상 추가

- 독립유공자, 5.18민주유공자 및 유족증 소유한 자에 대한 시설사용료 50% 감액 (안 제13조3호)

○ 체육시설 이용자 감면대상 신설

-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중 장애등급증 소유한 자에 대한 시설 사용료 50% 감액 (안 제13조6호)
- 특수임무부상자 및 유족, 특수임무공로자 및 유족에게 시설 사용료 50%감액 (안 제13조7호)

○ 중복 감액 적용 요구에 따른 민원 해소

- 감액기준이 중복될 경우 가장 많은 것 하나만 적용 명문화 (안 제13조8호)

라. 참고사항

○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67조

○ 「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23조

○ 「5.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59조

○ 「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제8조의3

○ 「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74조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김 성 근

○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

- 독립유공자·5.18민주유공자 및 고엽제후유의증 환자, 특수 임무수행자 등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국공립 공공체육시설 이용료를 감면해 주기 위하여 마련된 조례안임

○ 주요 내용은

- 독립유공자, 5.18민주유공자 및 유족중 소유한 자 시설이용료 50% 감액 추가 (안 제13조제3호)
-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중 장애등급중 소유한 자 시설이용료 50% 감액 신설 (안 제13조제6호)
- 특수임무부상자 및 유족, 특수임무공로자 및 유족에게 시설이용료 50% 감액 신설 (안 제13조제7호)
- 감액기준이 중복될 경우 가장 많은 것 하나만 적용토록 규정 (안 제13조제8호)

○ 검토 결과

-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을 기존의 국가 유공자에서 독립유공자·5.18민주유공자 및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특수임무수행자로 추가 신설하고,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기 위하여 마련된 안으로
- 본 조례안 개정으로 국가를 위하여 특별한 희생을 한 분들에게 합당한 지원을 함으로써,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할 것으로 사료되고, 감액기준 중복 시 적용규정 명문화로 이용객들의 민원해소 및 서비스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 론 요 지 : 생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